

大邱直轄市 達西區 現行條例中 改正 及 廢止  
條例(案)

(2次分 - 社會・都市委員會 所管)

達西區議會 條例整備特別委員會

## 조례 정비 대상 목록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직할시달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6. 대구직할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직할시달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8. 대구직할시달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대구직할시달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
10.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3-51
----------	-------

제안년월일 : 1993. 12. 7

제안자 : 박양헌사회·도시  
위원장 외 12인

## 1. 제안이유

-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대상 자격요건인 새마을 정신 함양부분과 추천자로 되어 있는 새마을 지도자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음.

## 2. 주요골자

-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중 새마을 정신부분과 새마을 지도자의 추천 조항 삭제

## 3. 개정조례(안)

#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새마을 정신"을 "생활력"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새마을 지도자"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용자대상) ① 기금의 용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등 <u>새마을 정신</u>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p>	<p>제3조(용자대상) ① .....                  ..... <u>생활력</u> .....                  .....                  .....</p>
<p>제5조(신청절차) ① 기금의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의 <u>새마을 지도자</u> 통장 및 동장의 추천을 받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제5조(신청절차) ① .....                  ..... (삭제) .....                  .....                  .....</p>

#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3-52
----------	-------

제안년월일 : 1993. 12. 7

제안자 : 박양현사회·도시

위원장 외 12인

### 1. 제안이유

-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 제10조(준용규정)를 법률용어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준용규정 용어의 자구를 수정코자 함.

### 2. 주요골자

- 제10조(준용규정)중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이외의"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으로 "정한바에 의한다"를 "준용한다"로 명확한 법률용어로 자구수정

### 3. 개정조례(안)

#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이외의"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정한바에 의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이외의 이자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 ..... .....를 준용한다.			

# 대구직할시달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3-53
----------	-------

제안년월일 : 1993. 12. 7

제안자 : 박양헌사회·도시

위원장 외 12인

## 1. 제안이유

- 대구직할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성금관리 및 지원대상자 선정등의 심의위원회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개정코자 함.

## 2. 주요골자

-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실효성이 없는 심의위원회 조항 삭제

## 3. 개정조례(안)

# 대구직할시달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를 "성금의 관리 및 지원대상자에 대해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 제4항, 제5항은 삭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심의위원회) ① (생략)</p> <p>② <u>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u></p> <p>③ <u>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u></p> <p>④ <u>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⑤ <u>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제5조(심의위원회) ① <u>현행과 같음</u></p> <p>② <u>성금의 관리 및 지원대상자에 대해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u></p> <p>③ (삭제)</p> <p>④ (삭제)</p> <p>⑤ (삭제)</p>

# 대구직할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안 번호	93-54
----------	-------

제안년월일 : 1993. 12. 7

제안자 : 박양헌사회·도시  
위원장 외 12인

## 1. 제안이유

- 대구직할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지원사항중통. 반장의업무한계를 현실성 있게 개정코자 함.

## 2. 주요골자

- 통.반장 지원업무중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 조항을 삭제

## 3. 개정조례 (안)

# 대구직할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대구직할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신·구조문 대조표

현	개 정 안
제2조(지원사항) ② 통, 반장은 <u>보험료 고지</u> <u>서 배부 및 징수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업</u> 무등을 적극 지원한다	제2조(지원사항) ② ..... (삭제)..... ..... .....

#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 (안)

의안 번호	93-55
----------	-------

제안년월일 : 1993. 12. 7

제안자 : 박양헌사회·도시

위원장 외 12인

## 1. 제안이유

-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815호(92.12.31)개정으로 인하여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운영세칙)에 규정됨으로 폐지.

## 2. 주요골자

-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 (안)

## 3. 폐지조례 (안)

#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 (안)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91.10.1 조례 20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폐지조례 : 별첨

#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개정 1991. 10. 1 조례 제202호]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4.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 3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 4 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회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8 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1991년 9월 6일부터 적용한다.

# 대구직할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안 번호	93-56
----------	-------

제안년월일 : 1993. 12. 7

제안자 : 박양현사회·도시  
위원장 외 12인

## 1. 제안이유

- 대구직할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제8조(회의)제3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때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조항은 법정 입안 심사기준(법제처) 지침에 의거 개정

## 2. 주요골자

- 대구직할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제8조 제3항 가부동수인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

## 3. 폐지조례 (안)

# 대구직할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

대구직할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제3항중 "결정권을 가진다"를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회의)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때는 <u>결정권을 가진다.</u>	제2조(회의) ③ .....		..... <u>부결된 것으로 본다.</u>	

# 대구직할시달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93-57
----------	-------

제안년월일 : 1993. 12. 7

제안자 : 박양헌사회·도시

위원장 외 12인

## 1. 제안이유

- 각종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농지의 감소로 신규 농업용수 개발이 필요치 않으며 기존 농업용수 시설도 점차 폐지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지역여건상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대구직할시달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 3. 폐지조례(안)

# 대구직할시달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88. 5. 1 조례 5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폐지조례 : 별첨

# 대구직할시달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제정 1988. 5. 1 조례 제55호]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시행하는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경비부과등) ① 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5조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참가자격자에게 금전 또는 부역, 현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역, 현품은 금전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비부과 총액은 당해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사비 기채원금, 이자 및 기타 필요한 경비 총액에서 보조금품과 구에서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경비부과 기준은 지구마다 토지의 지적 및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을 고려하여 부과한다.

④ 경비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경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에 예에 의한다.

제 5 조 (농지개량계) ①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지구마다 농지개량계를 조직 운영한다.

② 농지개량계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구직할시달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 (안)

의안 번호	93-58
----------	-------

제안년월일 : 1993. 12. 7

제안자 : 박양현사회·도시  
위원장 외 12인

## 1. 제안이유

-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상 직할시는 농촌에 속하지 않으며 본 조례는 지역여건상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대구직할시달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 3. 폐지조례(안)

# 대구직할시달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 (안)

대구직할시달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운영조례(88. 5. 1 조례 5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폐지조례 : 별첨

# 대구직할시달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 1988. 5. 1 조례 제 57호]

개정 1988. 8. 29 조례 제 81호

1989. 5. 1 조례 제121호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달서구에 농촌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촌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종합대책 추진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촌종합대책 추진상황 평가 및 분석
4. 소형관정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1989. 5. 1 조례 제121호)
5. 정부양곡보관안정관리 관한 사항 (신설 1989. 5. 1 조례 제121호)
6. 새마을기계화 영농단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1989. 5. 1 조례 제121호)
7. 복합영농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1989. 5. 1 조례 제121호)
8. 기타 농촌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 3 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1988. 8. 29 조례 제81호>

② 위원은 각 실·과장과 단위농협장, 농민대표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③ 간사는 산업계장이 되고 서기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업무추진일지를 작성 관리한다.

제 4 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업무추진) ① 위원장은 농촌지역 종합개발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 6 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8. 8. 29 조례 제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 5. 1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대구직할시달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안 번호	93-59
----------	-------

제출일자 : 1993. 12. 7.

제안자 : 박양현사회도시위원장  
외 12인

## 1. 제안사유

- 본 조례 제10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법률용어 정비 및 직제개편으로 서기의 직책을 개정코자 함.

## 2. 주요골자

- 본 조례 제10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1항중 각 위원회를 삭제하고 제4항중 서기는 산업계장을 지역경제계장으로 한다.

## 3. 개정조례 (안)

# 대구직할시달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대구직할시달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중 “각 위원회가”를 삭제하고 동조 제4항 서기는 다음에 “산업계장”을 “지역경제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新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각 위원회</u>가 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 서기는 <u>산업계장</u>이 된다.</p>	<p>제10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p> <p>..... (삭제) .....</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 <u>지역경제계장</u> .....</p>

4.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직할시 달서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8조(입원서약서 및 보증) ① <u>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 및 신용있는 보증인을 연서한 입원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u></p> <p>② <u>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납시킬 수 있으며 이 보증금은 퇴원시 본인에게 정산한다.</u></p> <p>[별지 제1호 서식] 입원서약서</p>	<p>제1조(목적) ..... 제8조..... ..... ..... .....</p> <p>제8조(입원서약서 및 보증) ① (삭 제)</p> <p>② (삭 제)</p> <p>[별지 제1호 서식] (삭 제)</p>

## 93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기관별	합 계		일 반 회 비		특 별 회 비	
	목 표	실 적	목 표	실 적	목 표	실 적
계	176,948	177,528	135,786	120,146	41,162	57,382
성당 1동	6,716	6,906	5,160	4,516	1,556	2,390
성당 2동	10,266	10,278	8,826	8,488	1,440	1,790
두류 1동	6,444	6,485	4,888	4,825	1,556	1,660
두류 2동	8,580	8,608	6,654	5,718	1,926	2,890
두류 3동	7,027	7,189	5,703	4,637	1,324	2,552
성서 1동	9,445	8,761	4,345	1,721	5,100	7,040
성서 2동	12,775	12,776	10,455	9,756	2,320	3,020
성서 3동	16,368	16,860	8,419	900	7,949	15,960
성서 4동	10,709	10,710	8,690	8,460	2,019	2,250
본 리 동	9,660	9,847	8,011	8,297	1,649	1,550
월배 1동	8,596	8,624	5,975	6,574	2,621	2,050
월배 2동	12,237	12,273	10,727	10,363	1,510	1,910
월배 3동	12,895	12,900	10,320	8,060	2,575	4,840
월배 4동	5,941	5,941	4,617	4,481	1,324	1,460
월배 5동	8,617	8,647	7,061	7,547	1,556	1,100
송현 1동	12,399	12,402	10,727	10,112	1,672	2,290
송현 2동	11,703	11,706	9,777	9,106	1,926	2,600
본 동	6,570	6,615	5,431	6,585	1,139	30

## 93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기관별	합 계		일 반 회 비		특 별 회 비	
	목 표	실 적	목 표	실 적	목 표	실 적
계	203,613	206,573	142,962	144,463	60,651	62,110
성당 1동	7,934	7,944	5,290	5,204	2,644	2,740
성당 2동	11,192	11,225	8,649	10,315	2,543	910
두류 1동	7,030	7,059	4,689	5,169	2,341	1,890
두류 2동	10,215	10,215	7,234	6,645	2,981	3,570
두류 3동	8,346	8,434	5,533	7,124	2,813	1,310
성서 1동	10,232	10,411	4,761	2,111	5,471	8,300
성서 2동	13,685	13,685	9,964	9,865	3,721	3,820
성서 3동	17,998	19,190	7,648	1,370	10,350	17,820
성서 4동	12,183	12,184	8,664	10,524	3,519	1,660
본 리 동	10,304	10,660	7,391	8,300	2,913	2,360
월배 1동	9,614	9,882	6,633	7,592	2,981	2,230
월배 2동	13,363	13,413	11,022	12,373	2,341	1,040
월배 3동	13,968	13,997	10,079	10,497	3,889	3,500
월배 4동	11,080	11,509	8,907	9,289	2,173	2,220
월배 5동	10,546	10,550	8,306	8,990	2,240	1,560
송현 1동	13,137	13,156	10,493	10,346	2,644	2,810
송현 2동	13,331	12,924	10,451	10,574	2,880	2,350
본 동	9,455	10,195	7,248	8,175	2,207	2,020